

대학원 스마트융합학과 운영 내규

2026년 8월 12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스마트융합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스마트융합학과 석사 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스마트융합학과 소속 교수들은 스마트융합학과 석사과정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4조 (입학정원) 입학정원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5조 (추가정원) 대학원 입학 추가 전형이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며, 입학 지원자 중 수학능력이 인정된 자로 추가 합격을 실시한다.

제6조 (입학지원자격) 입학자격은 대학원 규정 및 계약학과 운영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장 교과목 수강 및 취득 학점

제7조 (이수과목) 학부에서 스마트융합학과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자는 스마트융합학과 전공 관련 교과목을 보충 수강하여야 한다.

1. 이수 대상자는 학사 후 석사과정 전공을 바꾼 입학생, 편입학 이전의 전공을 바꾼 편입학생이다.
2. 보충과목 이수 학점은 석사과정 최대 12학점이다.
3. 보충 교과목 면제는 학과 교수회의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보충과목 인정은 보충과목 이수대상자가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이 현 전공학과의 하위학위 교육과정 교과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학과주임교수에게 “하위과정 이수교과목 비교표”를 작성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하면 보충과목 학점 취득으로 인정한다.

제8조 (취득학점)

1. 학점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다만, 스마트융합학과 석사과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기당 9학점 외에 추가로 3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 보충 교과목은 한 학기 최대 6학점을 초과 수강할 수 없다.
3. 석사과정 이수 학점은 30학점 이상이다. [전공 21학점+연구지도 9학점]
4. 스마트융합학과 석사과정의 연구지도학점 감면 및 수업연한 단축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장 논문지도

제9조 (지도교수의 선정)

1. 자신의 세부 전공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고 논문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논문지도교수 변경 시는 적합한 사유에 따라 원 지도교수와 변경 지도교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최종 변경 사항은 주임교수가 승인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10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석사과정: SCI급 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국내 논문 1편 이상 게재 시 면제한다. 단, 국내 학술발표 1회로 대체할 수 있다.
2. 세부 면제기준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제11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1. 응시 자격은 석사과정 전공 18학점 이상 취득과 외국어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이다.
2. 응시과목은 석사과정 전임교원의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이다.
3.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 또는 구두시험을 시행하며, 필기시험은 해당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교수가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1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한다.
4. 해당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교수가 부재 시에는 주임교수가 출제교수를 내정한다.
5. 종합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과목에 한해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학기에 재응시한다.
6. 전공 교과목 시험 시간은 각 교과목 당 60분이다.
7. 각 교과목당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12조 (외국어시험 과목)

1.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2. 외국어시험의 응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3조 (외국어 자격시험 면제)

1. 공인어학시험 성적에 따른 외국어 자격시험 면제는 영어 성적으로만 인정한다.
2. 해외 수학 또는 연수에 따른 외국어 자격시험 면제는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 또는 연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 또는 연수에 따른 면제 인정 여부는 대학원 관련 규정 및 학과 교수회의의 판단에 따른다.

제6장 학위과정

제14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 취득요건으로는 학위논문 제출 또는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논문대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부 학위취득 요건은 대학원 관련 규정 및 학과 교수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6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1. 연구계획서를 공개발표가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2.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 내에서 정해진 기간과 장소에서 연구계획서를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제17조 (학위논문의 지도 및 작성)

1. 연구계획서 발표 시 심사교수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2. 학위논문 기술은 교내 학위논문 작성 양식에 따른다.

제18조 (논문심사위원)

1. 논문 심사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위원의 전원 참석 하에 진행한다.
2.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전임교원 3인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제19조 (학위논문의 심사)

1. 논문 심사 진행 절차는 자격시험→계획서발표→논문작성→예비심사→본심으로 한다.
2. 예비심사는 교내 전임교원들이 참석하여 협의·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본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 (석사학위 논문 대체 자격 인정) 석사학위 논문 대체 자격 인정 여부 및 세부 기준은 대학원 관련 규정 및 학과 교수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장 대학원 위원회

제21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내 대학원 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를 운영한다.

제22조 (주임교수)

1. 전임교원 중 1인이 대학원 주임교수로 위촉받아 대학원 학사 및 행정 업무에 관하여 책임 및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의결사항을 논의한다.
2. 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9장 계약학과 운영

제23조 (계약학과 운영) 스마트융합학과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운영하며, 산업체 수요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참여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

제24조 (참여기업)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라 구성하며, 참여기업의 역할, 추가·변경·제외 기준 및 세부 운영방식은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실무훈련) 학생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3학기 일·학습병행 학기에 산업체 연계 실무훈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식은 계약서 및 별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26조 (등록금 및 학생지원) 등록금 부담, 장학금 및 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은 계약학과 운영계획, 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6. 08. 12.)

제1조 (시행일) 본 운영 내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